

설비건설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김 경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khkim210@kmcca.or.kr)

설비건설업의 현황

설비건설의 연혁과 전망

국내 건축설비의 최초 기원은 신석기 시대, 일부 주거물에 구들 모양의 연도가 설치된 것이 그 최초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그리고 옛 고구려 시대에는 대부분의 주거물에 구들 형태의 연돌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건축설비의 발전은 1910년 이후, 서양문물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냉방·난방기술이 발전되면서 건축물 전반에 냉·난방설비가 도입(공기조화설비)되어 건축실내에서는 계절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IT(Information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등의 최첨단 기술이 건축에 도입되면서 건축에서 각종 정보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건물을 인텔리전트빌딩이라 부르고 있다.

기술수준이 낮은 시대에는 건축전문가들도 설비에 대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건축설비는 「건축 부대(附帶)설비」로 불려왔다. 그러나, 현대건축에서는 공사규모로 볼 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을 만큼 건축설비는 건축에서 독립된 중심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건축전문가가 건축설비 설계 또는 시공을 담당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고도의 전문인력이 기계설비분야에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21세기는 환경친화의 시대, 인간중심의 시대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의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담당하여야 하는 설비건설분야의 비중과 활동영역도 상대적으로 커져갈 전망이다.

설비건설의 발전사

설비건설의 태동시기

1910년 이전에는 설비라는 것이 국내에는 거의 없었다. 1898년 전화, 1990년 전기, 이어서 1908년 수도가 가설되었으나, 건물에서는 기존의 구들장이라는 난방방식에 의하여 난방이 이루어져 왔다.

1) 설비건설의 도입시기

1911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시대에는 설비기술의 도입은 일본인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그때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로는 조선히otel과 서울시 청사가 있었으며, 저축은행본점(구 제일은행 본점)은 1933년 착공하였는데 급기와 환기덕트를 설치하고 공기조화에 의한 냉방과 난방을 한 최초의 건물이다.

2) 설비건설의 발전시기

해방직후에서 1960년대까지는 주한미군에 의한 설비 개·보수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쟁복구사업 그리고 경제개발수립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으로 설비도 많은 부분이 발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설비부분에서도 상당한 위축이 발생되었다.

3) 설비건설업의 탄생시기

건설업법 개정으로 단종건설업 면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76년 11월 설비계열로는 위생냉난방공사업 161개사, 기계기구설치공사업 39개사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1981년 단종건설업이 전문건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위생냉난방공사업과 기계기구설치공사업이 "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다. 1910년 이후 설비공사가 시작된 지 70년 만에 제도적으로 설비공사업이 인정된 것이다.

4) 설비건설의 비약시기

1980년대에는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10만평이 넘는 대형 건물들이 건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설비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989년 11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설립되어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시급성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초고층 아파트, 지역난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1996년에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1997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설비공사업의 명칭이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

며, 기계설비 업역도 확대되었다.

학술적 분류의 설비분야

설비의 분류체계를 언급하고자 하는 사유는 설비의 정의와 업역이 학술적인 체계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달라 많은 혼선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설비의 경우 그 설비의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기계공학을 전문으로 한 기술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의 기술심사를 기계분야가 아닌 토목분야에서 하고 있다.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콘베이어벨트 시스템은 그 전문분야가 학술적으로는 기계분야인데도 일부에서는 건축이나 전기가 발주 및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모순점이 있다.

기계분야의 학술적인 근간인 유체역학, 열역학, 재료역학을 기본으로 하고 진동공학, 계측공학 등 응용공학을 산업분야에 접목시킨 것이 기계분야의 설비이다.

따라서, 기계분야 설비의 영역은 건축공학보다 그 폭이 넓고 학문의 깊이도 깊다.

이런 기계분야의 설비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주거환경을 위한 설비인 건축기계설비와 산업의 생산물

<표 1> 기계분야설비의 학술적 분류

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비고
건축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분야	공기조화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배연설비, 특수설비(황온합승, 청정실, 지역난방설비, 방축열, 심야전력 이용설비, 태양열 이용설비, 열병합 발전, 냉동냉장설비, 집진기공사 등), 기타	공통사항: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보온도장, 방음방진 등
	위생설비분야	급수설비, 배수설비, 급탕설비, 주방, 위생설비, 가스설비, 오물정화조설비, 수처리설비, 특수설비(병원용, 실험용, 방사선용, 쓰레기 소각설비), 기타	
	운송설비관련분야	소방(기계)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기승관, 기계식 주차설비, 무대기계장치, 자동참고, 기타	
	가스설비관련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산업·환경설비(플랜트)분야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을 위한 산업설비, 가스공급과 저장을 위한 가스설비, 운송을 위한 운송설비, 소방 방재를 위한 소방설비,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기계분야 설비를 학술적으로 구분하면 표 1과 같다. 학술적으로 근본이 같은 기계분야설비는 기계기술자가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를 하여야만 기술적 오류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기계설비

1)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자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업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역은 크게 건축물 및 구조물 내의 냉·난방, 공기조화, 급수·급탕 등의 설비공사, 플랜트내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자동제어공사, 열절연공사, 자동창고, 무대기기 등 기기설치공사로 구분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역은 표 2와 같다.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플랜트공사업)

산업·환경설비인 플랜트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일반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건설업

자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업역은 생산설비, 발전설비, 환경설비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산업설비공사업자는 전체적인 산업설비와 그에 부대되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를 시공관리하는 건설업자이고 기계설비공사업자는 산업설비내의 기기 및 배관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역은 표 3과 같다.

3) 가스시설시공업

가스시설시공업은 시공업역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제1종은 가스분야의 모든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이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역은 표 4와 같다.

4) 승강기설치공사업, 난방시공업

기계설비 운송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를 시공하는 업종이며, 난방시공업은 보일러설치 등을 시공하는 업종이다.

설비공사비의 구성

건축물에서 설비공사는 기계, 전기, 통신으로 구별되며, 설비공사의 전체금액은 건축공사금액의 40%이상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기계설비공사금액은 전기와

<표 2> 기계설비공사업의 업역

건설업종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표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역

건설업종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통신공사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크다. 2004년도 조달청 공사의 공사금액 공종별 공사금액은 표 5와 같다.

설비와 L.C.C.

L.C.C.(Life Cycle Cost)는 건물의 생애비용으로 건설시공단계에 필요한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이외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비용, 점검보수비, 인건비, 리모델링에 필요한 개선비에 폐기처분비를 더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의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인데, 기계설비의 내구연한은 보통 15년이므로, 기계설비의 경우 건물의 생애동안 3번 이상의 갱신비가 필요하며, 또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기계설비의 생애비용은 건축물의 생애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시공계획단계부터 기계설비의 운용계획을 감안하여야 하고, 에너지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시공단계에서 성실시공이 중요하다.

설비건설업의 문제점

설비건설업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체공사

비의 25%를 차지하고, 건물생애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공사의 한 공종이다.

학술적인 기본체계가 건축·토목 및 전기공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기계설비를 전문으로 공부한 인력만이 기계설비를 시공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는 전기설비, 통신설비보다, 공사비로 보나 에너지사용으로 보나 중요한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상 기계설비의 업역과 정의가 불분명한 것과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 받도록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령에 문제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상 규정의 차이의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설비의 업역과 시공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건축법에는 설비의 정의부터가 잘못 기술되어 있고, 시공자격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설비공사에 무면허 시공을 차단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과 시공업

<표 4>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역

건설업종	주요내용
가스시설시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표 5> 공종별 공사금액 구성비(단위: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비고
1. 청사	65.19	18.36	11.56	4.9	
2. 초등학교	66.01	17.82	11.63	4.53	
3. 중·고등학교	69.19	17.79	9.58	3.44	
4. 대학교	74.52	10.10	10.29	5.09	
5. 우체국	52.64	19.58	12.42	5.36	
6. 경찰서	54.54	25.62	11.84	8.00	
7. 체육관	60.55	23.84	11.23	4.39	
8. 문예회관	68.14	19.22	9.94	2.70	

역에 대하여 기술한 법이다. 이 법에는 설비의 업역을 기계설비, 가스설비, 산업·환경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설비의 주된 업역은 전문공사분야인 기계설비로 분류하였고, 그 이외에 가스분야, 승강기분야, 보일러설치분야로 그 업역을 세분화하였으며, 산업·환경설비를 일반건설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계설비의 시공자격을 기계설비공사사업자로 규정하고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도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주택법

주택법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 받는 법이다.

주택법에는 주택건설업을 등록한자는 공동주택을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으나, 난방설비와 위생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20조에 위생설비와 냉·난방설비공사업의 시공자격을 기계설비공사사업자로 제한하였다.

3)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 제2조(정의)에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건축기계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의 업역에 포함된 공기조화, 열절연, 방음·방진, 자동제어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건축기계설비로 볼 수 없는 국기계양대, 우편물수취함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기계설비의 내용이 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설비공사 하도급수주의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기계설비공사사업자는 기계설비공사만을 수주토록 되어 있으며, 기계설비가 포함된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수주토록 규

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에는 단서조항(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분리발주를 금지하였다.

기계설비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 기계설비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는 일반건설업자만이 원도급으로 수주하게 되고, 기계설비공사사업자는 하도급으로 설비공사를 시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사업자는 대부분의 공사를 하도급으로 수주하고 있으며, 하도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저가하도급의 문제점

하도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가하도급이다. 저가하도급은 업계의 경영이익 악화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며, 또한 우수한 기술·기능인력이 유입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82% 미만시 저가하도급을 심사토록 법제화하였으나, 원도급자는 계약금액의 인위적인 조정, 이중계약 등으로 저가하도급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가하도급심사기준인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82%”를 “발주자 예정가격에 원도급자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82%”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불공정하도급계약 강요의 문제점

원도급자는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작업, 야간작업 비용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및 에스커레이션 미지급, 산재사고 발생 시 은폐강요 등 각종 불공정하도급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불공정하도급계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을 개정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

3) 4대 보험료 미지급의 문제점

건설근로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원도급자



에게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급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는 노무비의 11.3%이다.

그러나,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4대보험료를 지급 받고도, 하도급계약시 하도급공사비에 미반영하여 하도급자는 4대보험을 자비로 가입하여 경영악화가 발생하던지, 아니면, 4대보험을 미가입하여 법을 위반하여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4대 보험료를 현장단위별로 원도급자가 일괄가입하거나,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별도 정산 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설비건설업의 발전방안

설비건설업은 건축, 토목분야 같이 학문적·기술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전기 및 통신분야보다 월등히 큰 공사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하여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은 설비의 기준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혼선이 발생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설비건설업이 건설생산체계의 구조상 건축·토목공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하도급생산체계는 자기 기술력과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가 없으며, 설비분야의 수익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설비건설업계가 건설시장에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비한 원도급시장의 진출, 그리고 설비건설업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장·단기적인 사업목표를 설비건설업의 발전 방향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1)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장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장점은 시공품질 향상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설비 공사비용을 투명화할 수 있다. 즉 발주자가 집행하는 예산이 공사에 직접 투입

되어 저가하도급에 의한 예산누수 현상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사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원·하도급 계약금액의 차액이 시공비용 부분에 투입됨에 따라 공사품질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설비 시공품질의 향상으로 LCC에 의한 장기적인 예산절감효과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밖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건설관련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2)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건축 공사는 분할발주가 금지되어 있어, 건설업체가 대부분 전문건설업자인 기계설비업체에게 하도급 함으로서 정밀시공 및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의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2000년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각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였다.

3)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사례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KT 등 많은 기관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외국은 대부분의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다.

4)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제도개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단서3호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상의 혼선으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단서 3호에 기계설비공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설비건설업법 제정 추진

작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미화로 600억불

이다. 그리고 이중 1/3이 가정용, 상업용 건물에너지로 소비되고 있다. 이 건물에너지 중 조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가 냉·난방 등 기계설비를 운전하기 위한 에너지이다.

현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승용차 10부제 운용 등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1/3을 소비하는 건물에너지를 절감하지 않고는 에너지절감의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그리고 유지관리까지의 일관성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우리나라 설비의 건설체계는 설계는 건축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에,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감리는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경우 별도규정이 없고,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중앙난방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일러 관련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이 고작이다.

또한 기계설비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일반건설업체는 설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품질보다는 저가로 하도급을 주어, 설비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유능한 인력이 설비업체를 기피하게 되며, 결국은 설비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의 기술기준의 정립, 설비건설 수행체계의 원도급 참여와 설비건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설비건설업법 제정이 필요하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비한 설비건설업자의 원도급시장 참여

2005.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건설생산체계를 2007년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금년부터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는 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체계를 재조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전문건설업자도 수주가 용이하도록 발주방식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였다.

다만, 전문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일반건설업자는 일정기간동안 전문건설업 겸업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우리협회 건의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기공사와 같이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전면시행

설비분야 중 기계설비를 제외한 전기분야, 통신분야, 소방분야는 일반건설업자의 겸업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설비와 통신설비는 분리발주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분야는 분리발주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설비협회는 설비와 일반간의 겸업허용시 공공공사만이라도 분리발주를 전면시행하고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한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물론,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설비건설협회 주장이 관철되는 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전면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기계설비공사업자는 기계설비공사만을 수주토록 되어 있으며, 기계설비가 포함된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설비협회는 일반건설업자만이 수주하는 복합공사를 기계설비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를 법으로 보장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즉, 아파트공사의 경우, 기계설비, 가스설비,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의 전문업종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활성화, 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위하여 전체적인 시공관리를 위한 CM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일반건설업자가 전체적인 공정관리를 하고, 기계



설비업자 등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었으나, 국가계약법(국가기관의 계약제도에 적용되는 법)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 적용되는 법)에는 일반과 전문간의 겸업이 허용된 전문업종(가스, 철강재, 준설, 삭도설치, 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에 한하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었다.

설비협회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공공공사에 전면 도입하고,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자와의 시공실적평가, 경영평가방법을 연구하여 이를 재경부와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3) 시공참여자체도 개선

일반과 전문간의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협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시공참여자체 문제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즉 설비 등 전문건설업자는 심장 등 시공참여자와 능력급에 의한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고, 일반건설업자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건설업자가 설비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심장과 도급계약을 하거나 능력급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설비공사를 직영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런 사항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다.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저가하도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등 각종 하도급관련 규제가 발생되므로, 이를 회피하고, 하도급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직영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참여자체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건설산업이 수주산업이어서, 건설기능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능력급에 의하지 않고는 현장을 관리할 수가 없어, 시공참여자체도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를 활용하여 모든 공사를 직영처리 할 경우, 설비를 포함한 전문건설업계는 모두 문을 닫아야 될 것이 자명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시공참여자는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는 설비건설협회는 협회의 모든 힘을 결집하여 건설생산체계 개편시 우리협회 건의사항이 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9)